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54
----------	-------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 의 자 : 김기웅 · 김기현 · 권영세
김석기 · 서명옥 · 박충권
김재섭 · 김위상 · 임종득
김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에 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로 인해 신분 확인 및 보호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지고, 이주·보호 의사 확인 및 보호 기준 적용 역시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조사 단계부터 보

호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7조의3 신설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
2. 제1호 외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신원조사, 임시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북한이탈주민 이송결정위원회) 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이송결정위원회(이하 “이송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송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그 밖에 이송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필요한 조사”를 “필요한 조사(남한으로의 이주 의사 확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호신청자의 권리) ① 보호신청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원하는 보호신청자를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신청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보호신청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변호인의 동석
2. 녹음 또는 녹화 요청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 보호신청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3(이주 의사 확인)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송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 의사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보호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를 신청한 경우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u>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3조(적용범위)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p> <p>1. <u>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u></p> <p>2. <u>제1호 외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신원조사, 임시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u></p> <p><u>제6조의2(북한이탈주민 이송결정위원회) 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이송결정위원회(이하 “이송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② 이송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u></p>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⑤ 그 밖에 이송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호신청 등)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제7조(보호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
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
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신 설>

필요한 조사(남한으로의 이주
의사 확인을 포함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보호신청자의 권리) ①

보호신청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원하는 보호신청자를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하여 필
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신청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정보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보호신청자와 신뢰 관계에

<신 설>

있는 사람 또는 변호인의 동
석

2. 녹음 또는 녹화 요청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7조제4항
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
를 하려는 경우 제1항 및 제3
항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 보호
신청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3(이주 의사 확인) ① 국
가정보원장은 제7조제4항에 따
른 조사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 의사를 확인
하는 경우에는 이송결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